

회계감사보고서

사단법인 위스타트 귀중

2018년 2월 5일

본 감사인은 사단법인 위스타트의 2017년 2월 14일부터 2017년 12월 22일까지의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을 감사하였습니다.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.

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가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감사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동 보고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요구되는 보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사단법인 위스타트의 회계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 따라서 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

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사단법인 위스타트의 2017년 2월 14일부터 2017년 12월 22일까지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사단법인 위스타트의 회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41

안 세 회 계 법 인
대 표 이 사 장 용 석

